

입법정책정보

-제17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목 차 ||

| | |
|--|----|
| I. 상위법령 제·개정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
|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8 |
|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2 |
|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17 |
|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21 |
| 1. 울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 21 |
| 2.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 24 |
|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 28 |
|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 33 |

| 상위법령 제 ·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1호, 2024. 5. 28., 일부개정]

□ 제정 · 개정이유

○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입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40퍼센트 이하’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72퍼센트 이하’로 각각 상향함.

○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소유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개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용도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개축 허가를 신청하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③ (생략)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⑤ ~ ⑨ (생략)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 ③ (생략)

④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4. 5. 28.>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 일 것
 - 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제93조의3(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의 소유자가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8.>

1.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

가.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의 용도가 공장일 것

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제85조에 따른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2.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의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퍼센트. 이 경우 가목의 경우에는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가.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1)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 2) 증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3)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나.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3)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5. 17.] [대전광역시조례 제6261호, 2024. 5. 17., 일부개정]

제19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2022.2.17.>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내화구조 및 불연 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⑤ 법 제75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적용한다.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국·공·민·사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47조(건폐율의 강화) 법 제77조제4항제1호 및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퍼센트로 한다.

제48조(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8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6.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 변경은 영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각 세목의 기준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13.] [환경부령 제1092호, 2024. 5. 13.,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5년’ 에서 ‘8년’ 으로 늘리고, 해당 의무운행 기간 내에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회수요율을 20퍼센트로 정함.
 -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등의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범위에 2009년 9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어린이통학버스와 2006년 전에 제작된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 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같은 표 제2호바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 나.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2006년 전에 제작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착·교체하거나 개조·교체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5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증명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 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저공해자동차

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자” 라 한다)로부터의 구매 여부

나. 판매가격

다.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

라.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마. 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가치(킬로그램당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의 포함 정도를 말한다)

바.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 저공해건설기계

가. 판매가격

나. 연비, 작업량 등 성능

다. 그 밖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8년

2.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년
- ②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시행 2022. 12. 30.] [대전광역시조례 제5931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6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22.12.30.>

제3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 안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정비 권고) 시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저공해조치 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저공해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중 통근·통학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분뇨정화조청소 등 청소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6조(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검사의 절차에 따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20호, 2024. 5. 21.,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옥외광고물의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확대하고, 대학 및 그 부속시설에 광고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대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연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반영 대상 금액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철도역·도시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항공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1.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

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출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⑦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현황을 포함한 전년도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시구역이 기본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기본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자유표시구역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2. 광고물등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제3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호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방식 등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와 절차·방법에 따라 광고물등에 적용·사용될 수 있는 신소재, 신기술 또는 새로운 표시방법 등이 적용된 광고물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제29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이하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

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2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3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4.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3. 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0일 이내

④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6.] [대전광역시조례 제6196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25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4항제2호의 벽면 이용 간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간판
 -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3.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30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개발사업
3.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사업

제3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32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30호, 2024. 5. 28.,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취미활동, 긴급돌봄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등의 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대상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20조의3(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법 제3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포함한다)의 발급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항의 주간활동서비스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려면 조사의 일시·장소·목적·내용 및 담당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
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시행 2021. 4. 9.] [대전광역시조례 제5610호, 2021. 4.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사업의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사업

- 가.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나. 의사소통지원
- 다. 자조단체 활동지원
- 라.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지정·운영 등 보호조치
- 마.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 가. 조기진단 및 개입
- 나. 재활 및 발달 지원
- 다.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 라. 평생교육 지원
- 마.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 바. 소득보장 사업
- 사.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 아. 전환서비스 지원

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지원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 가.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 나.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 다.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보호·육성 및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시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제9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시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평생교육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발달장애인 전문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사업
2. 권리구제지원 사업
3. 공공후견지원 사업
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울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시행 2024. 5. 9.] [울산광역시조례 제2943호, 2024. 5. 9., 제정]

□ 제정이유

보도 등을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 등을 점용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 편의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보도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보도 등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 등에 임시로 설치한 통로이거나 기존 보도를 줄여 임시로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으로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행안전도우미를 육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면서 보도 등을 점용하는 경우 발주자

는 시행주체가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한다.

③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시장은 공사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비롯한 보행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지상 및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 구간 전체보도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된 경우

3. 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

4.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심의를 거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자격 및 교육) ① 공사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시장이 실시·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보행안전도우미로 배치한다.

②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

2. 보도 공사 시공 관련 교육

3.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통행 안내 방법

4. 교통안전을 위한 수신호 안내법, 교통법규 교육

5. 인사법, 대화법, 민원응대 및 친절 교육

6.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방법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 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및 우회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및 관계자에게 전달
5.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고 임무를 수행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수행을 나타내는 복장
2.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3.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4.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나 제8조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시행 2024. 8. 17.] [경기도조례 제8052호, 2024. 5. 16., 제정]

□ 제정이유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경기도민의 주거환경 및 생활권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통합 및 경기도민의 환경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공공정책, 기업의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폐기물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2. “공공정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말한다.
3. “갈등”이란 제1호에 따른 환경피해로 인하여 경기도민과 환경피해 원인제공자 등 다수의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을 말한다.
4.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환경피해로 인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민, 단체 등(이하 “이해당사자 등”이라 한다) 간에 발생한 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이해당사자 등이 2개 이상의 시·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군이 모두 갈등 조정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2.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이 갈등 조정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3. 국가, 경기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으로 발생한 환경피해로 인하여 도 내의 해당 시·군이 갈등 조정 지원을 요청한 경우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환경피해 갈등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경기도 환경피해 갈등관리계획(이하 “갈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갈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갈등관리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환경피해 갈등관리위원회 및 환경피해 갈등조정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갈등조정 사례분석 및 갈등 조정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갈등영향분석 실시) ① 도지사는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및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발생 유형, 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피해 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환경피해로 인한 이해당사자 등의 갈등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경기도 환경피해 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환경피해 갈등관리계획의 수립·추진
2. 제7조에 따른 환경피해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3. 제12조에 따른 환경피해 갈등조정실무협의회 구성·운영
4. 제13조에 따른 환경피해 갈등조정 지원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
5. 환경피해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6. 그 밖에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환경피해 갈등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환경오염 피해 및 갈등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갈등관리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따로 두며, 간사는 환경보건안전과장으로 한다.
 -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이 된 갈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갈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갈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갈등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갈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피해 갈등조정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환경피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갈등의 분야별로 경기도 환경피해 갈등조정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 2명,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이해당사자,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으로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위원간 합의에 의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도지사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정 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갈등조정 신청) ①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갈등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환경피해 갈등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의 수용여부에 대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합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합의된 결과문을 작성할 수 있으며, 합의결과는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에 작성된 합의결과문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위원회와 협의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은 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수행의 목적 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군 협력)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 및 조정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지급 등) 도지사는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업무담당자의 전문성과 갈등의 예방 및 조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전담조직 설치 등) 도지사는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의 예방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4-0086 / 요청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 의뢰안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각주: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 참조)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각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말함.)은 주변영향지역(각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말함(「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결정·고시를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맡을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하는데(제2항),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면서(제1항),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제3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함)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진천군조례”라 한다)는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제1조), 같은 조례 제12조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같은 조를 개정하여 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리(행정리를 포함한다)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추천 서명·날인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민대표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과 다르게 규정된 부분은 첫째, 주민대표의 거주요건인 주변영향지역의 범위에 대하여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정한다는 것, 둘째, 주민대표는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가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 셋째, 주민대표는 읍·면·동 단위로 선정되도록 한다는 것이고, 그 밖에 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는 주민대표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진천군조례가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을 고려할 때, 진천군조례에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격요건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주민대표 위원의 자격요건은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실체적 내용에 관한

사항이지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주민대표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진천군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인 읍·면·동별 주민대표가 지원협의체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변영향지역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선정한 주민대표로 하여금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되어 환경상 영향조사, 주변영향지역 결정, 주민지원사업의 결정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각주: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42520 판결 참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지원협의체 위원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에서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전문가 위원을 주민대표가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대표 위원 선정은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주민대표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 역시 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주민대표 위원의 자격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조례에서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4-0049 / 요청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의뢰안건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신규 전입자에 대한 주택신축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신규 전입자에 대한 주택신축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 및 확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권한을 분리·배분한 취지 및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산 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에 대해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은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부과 형식으로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부여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의무부과 형식으로 규정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강행규정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안군 주택신축 지원 조례안」(이하 “진안군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원대상을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단독주택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진안군수에게 주택신축지원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진안군수에게 반드시 해당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진안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정도의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진안군수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안군조례안 제5조제5항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평생 1회에 한해 지원하며, 한번 지원받은 대상자와 세대원은 어떠한 사유에도 다시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액은 주택 감정평가액의 50%를 지급하되, 지원 최대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안군수로 하여금 재량의 여지 없이 주택신축지원금을 지원대상자별 1회만 지급하도록 하거나 주택신축지원금액은 반드시 주택 감정평가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같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와 같이 해당 지원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진안군수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주택신축지원금 지급 횟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지원금액의 지급기준을 “주택 감정평가액의 50% 이내” 로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유럽의회, 「AI법」 가결

□ 주요내용

2024년 3월 13일(현지 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유럽연합의 「AI법」이 가결되었다. 「AI법」의 제정 목적은 고위험 AI로부터 인간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법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이 AI 분야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잠재적 위험과 영향 수준에 따라 AI와 관련한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이 법 제5조에 따르면 민감한 특성을 기반으로 한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넷 또는 CCTV 영상에서의 얼굴 이미지 무작위 수집 등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금지된다. 그리고 AI를 직장과 학교에서 감정 분석 또는 사회적 점수 평가에 사용하거나 오로지 개인의 특성 평가에 기반한 예측적 치안 유지 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인간 행동을 조작하거나 인간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AI도 금지된다.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을 법 집행기관이 공개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테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간적·지리적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사전에 사법적 또는 행정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은 고위험 사용 사례로 보며, 이 시스템을 형사 범죄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강·안전·기본권·환경·민주주의·법치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높은 위험을 내포하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무가 규정되었다. 이 법 부속서 III에 따르면 고위험 AI 시스템은 핵심 인프라·교육·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의료 및 은행 서비스 등)·사법 및 민주적 절차(선거 등)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AI 시스템은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여야 하며 사용자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사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법 제53조에 따르면 범용 AI 시스템과 그 기반이 되는 범용 AI 모델은 유럽연합의 저작권법 준수,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의 상세 요약 공개 등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강력한 범용 AI 모델일수록 모델 평가 수행,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사고 보고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법 제99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하고 경고, 비금전적 조치와 같은 집행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의 AI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자에게 최대 3,500만 유로(약 512억 원) 또는 해당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 7%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며, AI 시스템이 제조업자, 수입업자와 같은 경제 행위자나 인증기관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자에게 최대 1,500만 유로(약 219억 원) 또는 해당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 3%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이 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20일 후에 발효되며, 발효한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전면 시행된다. 단, 금지 대상 AI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발효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범용 AI에 관한 규정 및 처벌 규정은 발효한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고위험 AI 시스템에 관한 의무 규정은 발효한 후 3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유럽의회, 「AI법」 가결”, 공공누리 제1유형, 2024. 5. 9.